

『하나은행 OPEN API 이용약관』 개정 대비표

1) 개정시행(예정)일 : 2024.11.29(예정)

2)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<p>제 6 조 (서비스 이용신청 승인 및 거절)</p> <p>④ “은행”은 “이용신청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.</p> <p>9. “은행”이 “서비스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 6 조 (서비스 이용신청 승인 및 거절)</p> <p>④ “은행”은 “이용신청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.</p> <p>9. “은행”이 서비스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이용기업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추상적·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수정
<p>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</p> <p>① “서비스”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“은행”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, 또한 운영 상의 목적으로 “은행”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“은행”은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보한다.</u></p>	<p>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</p> <p>① “서비스”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다음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,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한다.</p> <p>1. 정기점검, 서비스 이용 향상 등을 위해 은행이 정한 날이나 시간</p> <p>2. 시스템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, 정전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</p> <p>③ “은행”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기업이 등록된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통지한다. 다만, 이용기업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</p>	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·제한·중단 조항 수정

3)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